

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13· 3· 11 규칙 제475호
일부개정 2014· 9· 12 규칙 제520호
(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17· 9· 8 규칙 제606호
일부개정 2023· 9· 8 규칙 제755호
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아·통장 임명에 관한
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른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경기준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청소년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.

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.

제3조(감경제외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동일인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(다만,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)
2.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.
3.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.

제4조(감경절차 등) 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,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.

부칙 <2014·9·12 규칙 제520호,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
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9·8 규칙 제60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반행위란 제11호사목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3·9·8 규칙 제75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·통장 임
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3. 9. 8>

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

위반행위	과징금액	정도에 따른 감경을		
		50% 감경	30% 감경	20% 감경
1.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·대여·배포, 시청·관람·이용에 제공한 때	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,000만원, 유통관련업자 100만원	판매금액		
		1만원 미만	1만원~3만원 미만	3만원~5만원 미만
2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	위반 횟수마다 1,000만원	매체물 수량		
		10개 미만	10개~30개 미만	30개~50개 미만
3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)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)의 담배를 판매한 때	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	판매금액		
		1만원 미만	1만원~3만원 미만	3만원~5만원 미만
4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)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)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·대여·배포한 때	위반 횟수마다 100만원	판매금액		
		1만원 미만	1만원~3만원 미만	3만원~5만원 미만
5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	1명 1회 고용마다 1,000만원	고용기간		
		10일 미만	10일~30일 미만	30일~90일 미만
6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)·2)·4)·5)·6)·7)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	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	고용기간		
		10일 미만	10일~30일 미만	30일~90일 미만

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

위반행위	과징금액	정도에 따른 감경을		
		50% 감경	30% 감경	20% 감경
7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	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	출입인원		
		3명 미만	3명~7명 미만	7명~10명 미만
8.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	위반 횟수마다 300만원	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.		
9.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	위반 횟수마다 300만원			
10.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·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	위반 횟수마다 1,000만원			
11. 공통사항				
가.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				50% 감경
나. 위협, 폭행,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(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)				50% 감경
다. 천재지변·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				50% 감경
라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(저소득 한부모가정, 차상위장애수당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)				50% 감경
마. 본인 및 가족(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)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				50% 감경
바.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				50% 감경
사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				50% 감경
자.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(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)				20% 감경
12. 과징금 처분(감경처분 포함)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,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.(다만,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				

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(제44조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과징금 금액
1.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·대여·배포, 시청·관람·이용에 제공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,000만원, 유통관련업자 100만원
2.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1,000만원
3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)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)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, 담배판매자 100만원
4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)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)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·대여·배포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100만원
5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	1명 1회 고용마다 1,000만원
6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)·2)·4)·5)·6)·7)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	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
7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	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
8.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300만원
9.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300만원
10.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·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	위반 횟수마다 1,000만원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4·9·12>

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검토서																			
위반자	성명		생년월일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	
위반내용																			
처분기준																			
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																			
감경(결정)내용																			
기타 의견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table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검토자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소속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직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성명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확인자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소속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직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성명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소속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직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성명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인)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이천시장 귀하</p>					검토자	소속	직	성명	(인)	확인자	소속	직	성명	(인)		소속	직	성명	(인)
검토자	소속	직	성명	(인)															
확인자	소속	직	성명	(인)															
	소속	직	성명	(인)						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4·9·12>

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

감경 처분일	업소명	인적사항			위반일자 /내용	부과기준 (과징금액)	감경내용		부과액	적용기준
		주소	성명	생년월일			감경율	감경금액		